

제1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

2004. 7. 21. () 10 : 00

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

심 사 보 고

총무위원회

거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4. 7. 9. 거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04. 7. 10.
- 다. 의안번호 : 제 2004 - 33호
- 라. 상정 및 심사일자 : 2004. 7. 16(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이유 및 취득 재산의 표시

가. 제안이유

- 썩먹인한우고기 브랜드 사업이 향토 지적재산 평가 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사업의 명품화 추진을 위한 썩 재배용 부지 확보와,
- 편익시설 부족으로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를 취득코자 함.

나. 취득재산의 표시

(: m² /)

구 분	재 산 별	재 산 소 재 지	물 건 및 지 목	수 량	예 정 금 액	비 고
			11	6,970	925,922	
		312-1		2,873	8,044	
		313		912	2,453	“
		370		1,487	2,513	“
		370-1		239	327	“

(: m²)

구 분	재 산 별	재 산 소 재 지	물 건 및 지 목	수 량	예 정 금 액	비 고
		859-1		36	19,296	
		859-2		231	161,700	“
		859-3		258	138,288	“
		858-1		93	365,100	“
		857-3		7	4,900	“
		858-4		235	164,500	“
		858-5		599	358,801	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축 재배용 부지

-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와 관련된 예산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 제1회 추경에 반영한 후 2004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음
-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하나 반영치 아니한 이유와 해당 토지에서 연간 축 생산가능량이 어느 정도이며 동 생산량으로 1년간 몇 마리의 소에게 축 공급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, 소관 상임위원회에 동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
- 현재 취득코자 하는 토지가 축 재배를 위한 기계화 작업등에 지장이 없는지와 현재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에 축을 재배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휴경지 등을 매수하여 재배 하는 게 효과적인 것인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.

나. 시장 주차장 설치 부지

-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3년도에 시장 옆 일방통행 도로와 하천변 도로와의 사이 지점에 1,093m²에 대해 813,000천원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 바 있음.
- 이번에 추가로 계획하고자 하는 주차장 부지는 농협에서 구 중앙약국 사거리 방향으로 내려가면 오른쪽 방향으로서 시장 내 일방통행 도로와 접하여 시장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며,
- 국비 10억원과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으로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음.
- 주 진·출입로의 폭이 좁고 주차장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는 차량이 사거리 정차 신호와 겹칠 경우 통행에 다소 불편이 따를 것이 예상.

4. 질의 및 답변요지(생략)

5. 토론요지(생략)

6. 수정안 요지(해당 없음)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(생략)

- 애우 사육 두수에 비해 축 사료 생산량이 부족하므로 비싼 토지 보다는 저렴한 휴경지를 매입하거나 기존의 축 재배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등 위치는 재고되어야 함

9. 기타 필요한 사항(생략)